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홍은1재정비촉진(정비)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2호(2010.12.16.)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2호(2013.3.28.) 및 제2013-327호(2013.10.4.)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48-149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(정비)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4-141호(2014.11.5.)로 홍은1재정비촉진(정비)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되어, 동법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홍은1재정비 촉진(정비)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하고자 합니다.

1. 공람기간 : 2014. 12. 17. ~ 2015. 1. 16.(30일간)
2. 공람장소 : 서대문구 도시관리과(☎330-8154)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
주무관

박상민

도시환경정비팀장 **차정관**

도시관리과장

구철회

환경도시국장

전결 12/11
여장권

협조자

시행 도시관리과-10472 () 접수 ()

우 120-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/ <http://www.sdm.go.kr>
전화 02-330-8154 /전송 02-330-1636 / 대시민공개